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7. 28.(수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민간임대 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두희, 서기관 남경웅, 사무관 곽희중, 주무관 손혜정, 홍지란 • ☎ (044) 201-4109, 4481
	주택 기금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배성호, 사무관 홍정배 • ☎ (044) 201-3340
	주택도시 보증공사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처장 김옥주, 팀장 박영훈 • ☎ (051) 998-2243
보 도 일 시		2021년 7월 29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29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1인 가구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

- 호당 최대 7천만원 · 저금리(1.8%) 지원 ... 전국 우리은행 방문 신청 -

□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,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와 주택도시보증공사(사장 권형택)는 7월 26일부터 ‘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’의 주택도시기금* 지원을 추진한다.

* (지원규모) 호당 최대 7천만원, (금리) 연 1.8%, (상환) 14년 만기일시상환

○ ‘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’은 ‘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(2.4대책)’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·오피스·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.

□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「민간임대주택법」에 따른 주택·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○ (신청방법)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(<http://hhuf.molit.go.kr>)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(☎1588-5000)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

○ (대출한도)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*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
* 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

○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「민간임대주택법」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*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(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)을 받을 수 있다.

* (초기임대료) 특별공급 시세 85% 이하, 일반공급 시세 95% 이하

(입주자격) 무주택자, 전체 호수 중 청년·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% 이상 등

□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“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
○ “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「주거복지로드맵」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「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'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'를 추가하고,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곽희종사무관(☎ 044-201-410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